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주차장임대사업 위해 상가건물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아님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부가-5277, 2022.05.23

질 의

-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06, 2022.03.29

질 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교부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법규부가-507, 2022.08.18

질 의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 석유저장 계약기간 동안 본건 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 회 신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함에 있어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석유저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332, 2022.08.11

■ 질 의

- (주)○○테크(이하 "질의법인")는 '00.7월부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 A지점이 폐기물 관련 허가사업장인 B지점으로부터 폐기물허가증을 위탁받아 원재료를 수입하고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A지점 명의로 제품수출을 하면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 받았는데
- '2년 폐기물허가증 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B지점 명의로 폐기물 관련 원재료 수입 및 통관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소액이며

※ B지점 명의로 원재료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가능 여부를 질의

- A지점에서는 폐기물을 제외한 원재료 등 수입 및 제품수출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②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임
- * 질의법인의 전체 수출액 비중은 72.8%이고, 그 중 A지점이 99.8% 차지

질의

-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